



CIRCULAR

36 Myeongji ocean city 9-ro,
Gangseo-gu, Busan, 618-814
Republic of Korea

Phone : +82-70-8799-8512
Fax : +82-70-8799-8419
E-mail: jsupark@krs.co.kr
Person in charge : Park Jae-sung

To: 전 검사원 및 관련업체

No : 2017-4-E

Date : 2017.7.28

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목 (Subject) | 9.102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 (규칙 및 지침 1편) |
| 적 용 (Application) | 2017년 8월 1일 (검사 신청일 기준) |

1. 2017년판 선급 및 강선규칙/적용지침 1편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,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, 이 내용은 2018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18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= 아 래 =

- 1) 선급검사요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여객선 및 어선에 대한 선급이전(TOC)시 선급이전 절차를 적용하지만 검사사항은 제조후 등록검사 요건 적용.
- 2) 절연저항의 계측기록과 관련하여 해수부 지도감독 사항 반영.
- 3) 소음 및 진동 지침의 제정에 따라 진동계측 전문공급자의 요건 제정.

첨부: 선급 및 강선규칙/적용지침 1편 ----- 1부. (끝)

기술본부장 김 창욱

<첨부>

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사항

(제 1편 선급등록 및 검사)

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장 선급등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~ 제 3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절 제조후등록검사</p> <p>401. 제조후등록검사 제조후등록검사에 있어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령에 따라 그 선령에 해당하는 정기검사와 동등한 정도로 선체, 기관, 의장 및 비품의 구조, 재료, 공사 및 현상을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주요부분의 현 재치수를 실측한다. 【지침 참조】</p> <p>402. 도면의 제출 제조후등록검사에 있어서는 제조중등록검사에 준한 주요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만약 도면의 제출이 불가능할 때는 우리 선급 검사원이 선박에서 필요한 사항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 【지침 참조】</p> <p>403. 타선급선의 등록검사 국제선급연합회(IACS)의 QSCS(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)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을 우리 선급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종류 및 검사사항 등은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. 【지침 참조】</p> <p><이하 생략>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장 선급등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~ 제 3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절 제조후등록검사</p> <p>401. 제조후등록검사 제조후등록검사에 있어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령에 따라 그 선령에 해당하는 정기검사와 동등한 정도로 선체, 기관, 의장 및 비품의 구조, 재료, 공사 및 현상을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주요부분의 현 재치수를 실측한다. 【지침 참조】</p> <p>402. 도면의 제출 제조후등록검사에 있어서는 제조중등록검사에 준한 주요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만약 도면의 제출이 불가능할 때는 우리 선급 검사원이 선박에서 필요한 사항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 【지침 참조】</p> <p>403. 타선급선의 등록검사 또는 <u>선급이전(TOC(Transfer of Classification)) (2017)</u> 국제선급연합회(IACS)의 QSCS(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)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을 우리 선급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종류 및 검사사항 등은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. <u>다만, 여객선 및 어선의 경우, 타선급선의 등록검사(TOC) 절차를 적용하지만 검사항목은 401. 제조후등록검사 요건을 적용한다.</u> 【지침 참조】</p> <p><이하 현행과 동일></p> |

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사항

(제 1편 선급등록 및 검사)

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장 선급등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~ 제 3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절 제조후등록검사</p> <p>401. 제조후등록검사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우리 선급에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이 우리 선급에서 정하는 사전검사 대상선박인 경우에는 등록검사를 착수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검사 여부를 결정한다. 검사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2. 규칙 401.에서 선체, 기관 및 의장 등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현재치수를 실측하는 주요부분은 등록 자료를 검토하여 건명서의 기재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. 3. 규칙 401.을 적용함에 있어서 “정기검사와 동등한 정도”라 함은 선박의 선령 및 선종에 따라 두께계측을 포함한 선체 및 기관에 대한 정기검사, 입거검사,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등의 검사와 보일러검사의 해당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. 4. 우리 선급은 재료시험, 비파괴시험, 수압시험 및 해상시운전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검사, 시험 및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. 5. 등록신청을 하기 전 5년의 어느 일부 기간 동안에 선박이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우리 선급, 또는 (2) 그 선박을 등록하고 있었을 당시 국제선급연합회(IACS)의 QSCS(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)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등록되었던 경우, 검사요건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할 수 있으나 지침 403.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이하 생략>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장 선급등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~ 제 3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절 제조후등록검사</p> <p>401. 제조후등록검사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우리 선급에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이 우리 선급에서 정하는 사전검사 대상선박인 경우에는 등록검사를 착수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검사 여부를 결정한다. 검사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2. 규칙 401.에서 선체, 기관 및 의장 등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현재치수를 실측하는 주요부분은 등록 자료를 검토하여 건명서의 기재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. 3. 규칙 401.을 적용함에 있어서 “정기검사와 동등한 정도”라 함은 선박의 선령 및 선종에 따라 두께계측을 포함한 선체 및 기관에 대한 정기검사, 입거검사,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등의 검사와 보일러검사의 해당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. 4. 우리 선급은 재료시험, 비파괴시험, 수압시험 및 해상시운전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검사, 시험 및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. 5. 등록신청을 하기 전 5년의 어느 일부 기간 동안에 선박이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우리 선급, 또는 (2) 그 선박을 등록하고 있었을 당시 국제선급연합회(IACS)의 QSCS(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)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등록되었던 경우, 검사요건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할 수 있으나 지침 403.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. 6. <u>선급이전(TOC)되는 여객선 및 어선의 경우, 검사항목은 상기 항목 중 1, 2, 3 및 4항까지만 적용한다. (2017)</u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이하 현행과 동일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403. 타선급선의 등록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이하 생략></p> <p>4. 등록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이하 생략></p> <p>(1) 선급이전으로 우리 선급에 등록하는 경우</p> <p>(가) 모든 검사가 최신화되었다는 기록에도 불구하고, 다음과 같이 선령 및 탈급선급의 선급현황에 기초하여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 등록검사를 최소 기술요건으로써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우리 선급은 선박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범위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(a) 선체 등록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이하 생략></p> <p>(viii) (iv) 및 (v)를 적용함에 있어서, 타선급선의 등록검사를 시행하는 시점이 선박의 입거검사 시기가 아닌 경우 입거검사(선체검사항목)를 대신하여 수중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. 단, 선령이 20년을 초과 및 총톤수 100톤을 초과하는 한국어선법 적용대상인 어선의 경우 수중검사(선체검사항목) 대신 입거검사(선체검사항목)를 시행하여야 한다. (2016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이하 생략></p> | <p>403. 타선급선의 등록검사 또는 선급이전(TOC(Transfer of Classification)) (2017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이하 현행과 동일></p> <p>4. 등록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이하 현행과 동일></p> <p>(1) 선급이전으로 우리 선급에 등록하는 경우</p> <p>(가) 모든 검사가 최신화되었다는 기록에도 불구하고, 다음과 같이 선령 및 탈급선급의 선급현황에 기초하여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 등록검사를 최소 기술요건으로써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우리 선급은 선박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범위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(a) 선체 등록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이하 현행과 동일></p> <p>(viii) (iv) 및 (v)를 적용함에 있어서, 타선급선의 등록검사를 시행하는 시점이 선박의 입거검사 시기가 아닌 경우 입거검사(선체검사항목)를 대신하여 수중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. (2017) 단, 선령이 20년을 초과 및 총톤수 100톤을 초과하는 한국어선법 적용대상인 어선의 경우 수중검사(선체검사항목) 대신 입거검사(선체검사항목)를 시행하여야 한다. (2016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이하 현행과 동일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선급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8 절 한국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</p> <p>1801. 한국 선박안전법 적용선박에 대한 특별규정 (2017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규칙 301.(중간검사의 검사시기)의 3항 및 규칙 401.(정기검사의 검사시기)의 4항 및 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, 규칙 1801.의 3항의 선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2. 303.의(중간검사의 기관, 전기 및 추가설비)의 3항 및 502.(정기검사(기관, 전기 및 추가설비)의 검사사항)의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,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에 설치된 내연기관의 개방검사 시기는 선박안전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. 3. 내수면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입거검사는 정기검사와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중검사로 대신할 수 있으나, 여객선에 대하여는 연속하여 3회를 대신할 수 없다. 4. 규칙 1801.의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, 계측기록에는 <u>계측자의 회사명 및</u> 계측자의 서명, 계측장비, 측정된 설비 목록, 측정값, 계측장비의 유효성 확인(검교정 기록 등) 및 기관장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 (2017) 5. <생략> ↓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이하 생략>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선급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8 절 한국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</p> <p>1801. 한국 선박안전법 적용선박에 대한 특별규정 (2017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규칙 301.(중간검사의 검사시기)의 3항 및 규칙 401.(정기검사의 검사시기)의 4항 및 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, 규칙 1801.의 3항의 선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2. 303.의(중간검사의 기관, 전기 및 추가설비)의 3항 및 502.(정기검사(기관, 전기 및 추가설비)의 검사사항)의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,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에 설치된 내연기관의 개방검사 시기는 선박안전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. 3. 내수면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입거검사는 정기검사와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중검사로 대신할 수 있으나, 여객선에 대하여는 연속하여 3회를 대신할 수 없다. 4. 규칙 1801.의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, 계측기록에는 <u>계측자의 회사명 및 회사 직인과</u> 계측자의 서명, 계측장비, 측정된 설비 목록, 측정값, 계측장비의 유효성 확인(검교정 기록 등) 및 기관장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 (2017) 5. <현행과 동일> ↓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이하 현행과 동일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록 1-11 전문공급자 승인지침</p> <p>1. ~ 3. <생략> 4. 적용</p> <p>(1) 이 절차는 다음 분류의 전문공급자의 승인에 적용한다. (가) ~ (바) <생략> (사)기타 서비스회사</p> <p><이하 생략>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록 1-11-1 다양한 분류의 전문공급자별 특정요건</p> <p>1. ~ 6. <생략> 7. 기타 서비스회사</p> <p>1항부터 6항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공급자로서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<이하 생략>.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록 1-11 전문공급자 승인지침</p> <p>1. ~ 3. <생략> 4. 적용</p> <p>(1) 이 절차는 다음 분류의 전문공급자의 승인에 적용한다. (가) ~ (바) <현행과 동일> (사) <u>선박의 거주성 관련 진동측정에 종사하는 회사 (2017)</u> <u>(아)</u> 기타 서비스회사</p> <p><이하 생략>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록 1-11-1 다양한 분류의 전문공급자별 특정요건</p> <p>1. ~ 6. <생략> <u>7. 선박의 거주성 관련 진동측정에 종사하는 회사 (2017)</u></p> <p><u>7.1 업무범위</u> <u>선박의 거주성 관련 진동의 측정</u></p> <p><u>7.2 감독자</u></p> <p><u>7.2.1 감독자는 전문공급자의 일반요건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(1) 인정되는 국가 또는 국제 비파괴시험 표준(예를 들면, 개정된 ISO 9712, 개정된 EN 473 또는 이와 동등한 표준 레벨 II)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. 또는,</u></p> <p><u>(2) 선박의 진동측정 감독에 대한 최소한 1년 및 진동측정 수행에 대한 최소한 2년의 경력을 가져야 한다.</u></p> <p><u>7.2.2 감독자는 시험 절차가 요구되는 시험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증 하기 위하여 ISO 20283-5에 따른 선체 진동의 분석 및 선박의 구조 및 장비, 측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.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|---|
| | <p><u>7.3 작업자</u></p> <p><u>7.3.1 측정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(1) 인정되는 국가 또는 국제 비파괴시험 표준(예를 들면, 개정된 ISO 9712, 개정된 EN 473 또는 이와 동등한 표준 레벨 I)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. 또는,</p> <p>(2) 측정의 수행 보조 작업자로서 최소한 1년의 경력(최소한 5회의 각각 다른 진동측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)을 가져야 한다.</p> <p><u>7.3.2 선체 진동 측정 및 측정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.</u></p> <p><u>7.3.3 선박의 구조 및 장비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.</u></p> <p><u>7.4. 참조문서</u></p> <p><u>전문 공급자는 다음의 참조 문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</u></p> <p>(1) ISO 20283-5:2016 (<u>Mechanical vibration - Measurement of vibration on ships - Part 5: Guidelines for measurement, evaluation and reporting of vibration with regard to habitability on passenger and merchant ships</u>)</p> <p>(2) KR-GC-21-K(<u>소음 및 진동 지침</u>)</p> <p><u>7.5 장비</u></p> <p><u>7.5.1 사용되는 장비가 적용 가능한 측정 표준에 부합하는지 검증되어야 한다. 의도한 목적에 적합함을 검사원에게 시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7.5.2 선박의 거주성 관련 진동 측정은 ISO 8041에 적합한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되어야 한다.</u></p> <p><u>7.5.3 휴대용 교정기(Portable calibrators)는 국가 또는 국제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7.5.4 진동 트랜스듀서와 휴대용 교정기는 ISO 17025에 따라 인정된 교정기관에서 최소 2년에 1회(또는 제조자가 명시한 경우 더 자주)이상 교정되어야 한다.</u></p> <p><u>7.6 절차서 및 지침서</u></p> <p><u>전문공급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문서화된 업무절차서 및 시험지침서를 갖추어야 한다.</u></p> <p>(1) <u>시험 준비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|---|
| | <p>(2) 측정 위치의 식별 및 선정</p> <p>(3) 표면 준비</p> <p>(4) 교정 확인</p> <p>(5) 시험 방법</p> <p>(6) 장비의 취급</p> <p>(7) 보고 준비 및 내용</p> <p>(8) 후속 교정을 통해 허용 오차를 벗어난 경우, 이전 측정 결과 취급 방법</p> <p>7.7 보고서</p> <p>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(1) 배의 종류 및 총톤수, 치수</p> <p>(2) 주 기관의 운전 상태 및 주기 회전 수, 가변 피치 프로펠러의 상태</p> <p>(3) 보조 기관 및 보조기기의 운전 상태</p> <p>(4) 선박의 적하상태</p> <p>(5) 시험 장소 및 흘수, 수심, 기상과 해상 상태</p> <p>(6) 측정 장비(형식 및 제조자 등)</p> <p>(7) 측정 실시자의 소속과 성명</p> <p>(8) 측정 구역 및 개소</p> <p>(9) 측정 결과</p> <p>(10) 각 측정 장소에서의 측정 방향(x, y, z방향)</p> <p>8. 기타 서비스회사 (2017)</p> <p>1항부터 7항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공급자로서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<이하 현행과 동일>.</p> |